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7. 13 선고 2022가단40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변론 종결2023. 6. 8.

판결 선고2023. 7.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6. 1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10. 21. 접수 제282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전전양수받았고,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3601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1. 15. "11,858,608원 및 그중 4,090,470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2021. 12.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의 부친인 소외 망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다. C를 포함한 망 E의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21. 6.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10. 21. 접수 제282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중 C의 상속분은 2/13이다.

다. C는 2021. 6. 14.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보면,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물반환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인석

별지